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79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시의 각종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시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미래형 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주요골자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연·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25,4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24,500천원

- 70,000원 × 70명 × 5회 = 24,500,000원

○ 자료조사 여비 : 900천원

- 30,000원 × 10명 × 3명 = 900,000원

※ 예산확보 상황

• 기정예산 확보(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 6,000천원

• 부족액(향후 추경에 반영) : 19,400천원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7. 4. 4 . ~ 4. 25.(20일)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정의 주요정책 방향과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 및 연구·조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산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연구·조사 활동을 한다.

1.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
3. 기관·단체 등이 제안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
4. 시민편익 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학계인사, 전문직업인, 사회단체의 임원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분과위원회) ① 특정사안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중복되고 일정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자문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일부 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자가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제출 및 자료협조) ① 위원회의 위원과 시 산하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조사활동을 한 위원
2.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에 출석한 위원
3.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을 의뢰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행복연구담당 이경래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이병인 (행정 2057)